「구미청년 지역정착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가. 지역 청년에게 관내 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임.

나.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구미청년 지역정착 인턴십 지원사업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가)「지방자치법」제117조

나)「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4조, 제6조

다)「구미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8조

라)「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2) 필요성: 축적된 기업 관련 지원사업의 경험과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 발굴, 인재매칭, 사업관리 등 체계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

다. 위탁사무 내용: 구미청년 지역정착 인턴십 지원사업 업무 전반

1) 세부 사업계획 수립

2) 기업발굴, 청년-기업 매칭,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3) 기업 프렌드십 운영, 근무여건 조성 및 채용 연계 등

라. 위탁시설(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해당없음

마. 위탁기간: 2027. 4 ~ 2028. 2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340백만원(시비)

(단위: 백만원)

계	사업비	간접비	인건비	비고
340	238	34	68	

사.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 ※ 2026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26.8.18.)

아. 위탁구분: 재계약 (수탁기관: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자. 부서의견: 기업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구미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8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나. 예산조치: 2027년도 예산편성 예정

다.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 2026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라. 성과보고서 및 성과평가 결과, 감사결과: 안건 참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관내 청년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운영 등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최근 지역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과 지역 소멸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1],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기업과의 매칭을 돕는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그간 축적된 기업 지원 경험과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적극적인 기업 발굴부터 청년 매칭,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관내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채용 연계와 지역 청년들의 유출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임.

1) 구미시 20세~39세 인구현황(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단위:명)

	2024년	2025년	2026. 7월 말
총인구수	404,820	403,883	402,691
20~29세	48,816	43,985	42,455
30~39세	58,341	57,715	57,050